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대학”이라 한다)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동영상강의와 실시간화상강의를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이하 “원격수업”라 한다)은 교수-학습 활동의 70%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진 교과목을 말한다.

③ 강의 방법은 동영상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동영상강의”란 교수자가 사전에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하며, “실시간 화상강의”란 지정된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하며 진행하는 강의를 말한다.

④ “블렌디드수업교과목”이란 교수-학습 활동의 70%미만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진 강의로, 원격수업과 교실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및 교육 협력기관의 원격수업과 블렌디드수업 중에 대신대학교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의거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적용된다.

제4조(원격수업 개설과 운영) ① 원격수업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1> 원격수업/블렌디드 수업 개설신청서를 담당 학과에 제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결의로 개설한다. 승인받지 않은 원격수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으로 전임교원 중심으로 개설하지만, 필요에 따라 교과목 해당 교원(비전임, 강사)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

③ 해당 연도 학기별 개설된 각 전공(학과) 개설 과목을 다양한 형태(동영상강의, 실시간 화상강의 등)의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단, 블렌디드 수업은 제한이 없으며 재해, 재난, 전염병의 창궐, 관할청의 권고와 시대의 변화와 상황적 흐름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원격수업의 개설 과목수는 관련 훈령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작된 동영상 강의는 3년을 주기로 재개발 또는 수정 보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4.09.01.)

제5조(취득학점 비율) ① 본 대학 또는 대학원 학생은 원격수업 수강의 취득학점비율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블렌디드 수업 또한 제한이 없다. 다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는 없다. (2021.11.29. 개정)

② 재해, 재난 및 감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침 및 권고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권장될 경우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관할청의 원격수업관련 운영기준 및 훈령이 변동될 경우에는 원격수업 취득학점의 비율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평가관리) (삭제 2024.09.01.)

제7조(이수시간 및 시수인정) ① 원격수업 교과의 이수 단위와 시수인정은 일반적인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평점 및 학점제로 운영한다.

② 동영상 강의의 콘텐츠 분량은 1학점 당 25분 이상을 기준으로 제작해야 한다. 단,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토론 수업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5분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③ 수업일 수는 15주 이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원격수업 출석) ① 학칙(출석)에 준한다.

② 원격수업 출석이란 각 주차 학습기간 내에 강의 콘텐츠의 출석 인정 기준시간 이상 학습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9조(원격수업 질 관리) ① 본 대학교 원격수업은 질 관리를 위해 1회 이상 오프라인 시험을 실시하거나 오프라인상에서의 보충강의나 질의응답 등의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퀴즈, 과제, 토론 등의 온라인 학습활동은 담당교과목 교수 재량껏 실시한다.

제10조(원격수업 관리 위원회 구성)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동영상 강의의 신규 개발과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의 유지 또는 수정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과 학생 등 10명 이내로 총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원격 교육지원센터장(부재시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원격교육지원센터장(부재시 교육학습지원센터장)이 하며, 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원격수업 관리 위원회 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 운영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심의
2. 원격수업 강좌 품질 관리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원격수업 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11조(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본교에 속한다.

② 본교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우리 대학교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텐츠 개발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배포나 활용을 불허한다.

제12조(강의시수 인정 및 강의료 지급 기준) ① 원격수업의 시수는 정규 강좌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인정한다.

② 동일한 원격수업은 수강인원 및 분반 여부에 관계없이 단일 강좌로 본다. 다만, 원격수업의 수강인원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강의시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의 강의료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지침을 따른다.

제13조(원격수업의 개발지원) ① 원격수업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의 개발경비의 지원 대상 교과목,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저작권) ① 본대학 전임교원이 개발한 원격수업의 저작권은 본 대학이 소유한다.
② 본대학 전임교원 이외의 자가 개발한 원격수업의 저작권은 개발자와 본 대학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15조(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담당부서)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및 운영은 원격교육지원센터(부재시 교육학습지원센터)가 담당한다.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원격 수업/블렌디드 수업 개설 신청서

대신대학교 원격수업/블렌디드 수업 개설신청서

담당교수	소속	학과		전공
	성명			
	e-mail	휴대전화		
강좌	교과목명			
	학점		개설학년	
	개설연도		개설학기	
	강좌구분	() 원격수업	() 블렌디드수업	
과정개요				
성적평가방법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출석 %		
주요 내용 (주차별 주요 교육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원격수업 / 블렌디드 수업을 개설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학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학과장: (인)</p>				